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04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김정호·정춘숙·어기구

윤후덕 • 박홍근 • 허종식

양경숙·강선우·이병훈

정태호 • 박찬대 • 김윤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감염병으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동안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u>이 법에 따</u>	<u>다음 각 호</u>
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u> <신 설></u>	1.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
	리되는 경우
<u><신 설></u>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
	<u>방접종을 받은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